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46 발의연월일: 2022. 3. 24.

발 의 자:김경만·강병원·강선우

김두관 · 김정호 · 송옥주

양기대 • 이동주 • 이병훈

진성준 · 허종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의 운영자는 세정탑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장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사업장의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으로 한정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운영자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악취방지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설치·운영 부담을 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 주요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악취저감기술"을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 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기술을 지원할"을 "재정적·기술적 지 원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 지원"을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u>악취저감기술</u> 지원) ① <u>환</u>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경부장관은 악취를 배출하는	<u>·기술적</u> 지원) ① <u>환경부장관,</u>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u> -
필요한 <u>기술을 지원할</u> 수 있다.	
	<u>재정적</u>
	<u>•기술적 지원을 할</u> .
② 제1항에 따른 <u>기술 지원</u> 의	② <u>재정적·기술</u>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u>적 지원</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